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1-26호

「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1월 1일

## 강릉시 의회의장

#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정이유

- 농업기계 정비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액을 확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농가당 연간 3기종 이내로 대형기종 상한액 확대(안 제3조제2항)
  - 기종당 상한액
    - 1. 대형기종: 20만원
    - 2. 중형기종: 10만원
    - 3. 소형기종: 5만원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:

- 주소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
- 전화: 033-640-4100
- 팩스: 033-640-4070

붙임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농가당”을 “연간”으로, “제한하며 기종 당 15만원 한도로 연간 45만원”을 “60만원”으로, “없다”를 “없으며,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대형기종: 20만원
2. 중형기종: 10만원
3. 소형기종: 5만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3조(부품비 지원) ① (생   략)</p> <p>② 지원대상 농업기계는 <u>농가당</u> 3기종 이내로 <u>제한하며 기종 당</u> <u>15만원 한도로 연간 45만원을</u> 초과할 수 <u>없다.</u></p> <p>&lt;신   설&gt;</p> <p>&lt;신   설&gt;</p> <p>&lt;신   설&gt;</p>	<p>제3조(부품비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연간</u> ---- ----- <u>60만원</u>----- ----- ----- <u>없으며, 상한액은 다음</u> <u>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<u>대형기종: 20만원</u></p> <p>2. <u>중형기종: 10만원</u></p> <p>3. <u>소형기종: 5만원</u></p>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 법규명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·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